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8년 3월
제74회 임시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2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및제안자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2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서구의회(임시회) 회기중
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2월 17일 상정 미료의결)
제74회 서구의회(임시회) 회기중
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3월 24일 상정 부결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< 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>

가. 제안사유

- 상무지구의 인공호수, 광장, 분수대와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170천㎡의 대규모 시민공원과 5개소의 근린공원, 12개소의 어린이 공원과 가로수 및 기타 수목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. (1계, 6명)
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기능 강화와 상무지구 현장민원실·우편취급소·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정소송의 승소대책 마련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정원 조정의 필요성 대두

나. 주요골자

- 구분청 정원 “362명”을 “381명”으로 19명을 증원 조정함(제2조제1호)
- 동.정원 “235명”을 “222명”으로 13명을 감원 조정함(제2조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 전문위원 박종근 >

-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원관리계 신설과 자체 정원 조정안으로 상무지구 택지개발로 많은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각종 생활민원 및 일반 행정수요의 증가로 현장민원실 인력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과
- 신규조성된 대규모 시민공원을 비롯한 17개소의 근린공원, 녹지, 가로수, 광장등의 관리업무가 발생하여 정원이 승인되었으나 업무분장시 기존의 녹지계와의 조정 등 효율적인 보완 및 대책이 필요하며
- 동사무소 세무담당인력 13명을 감축하여 세무전문직 8명은 지방세 징수업무에 기타5명은 시설관리업무, 자원봉사센터운영, 우편취급소 및 FAC민원 및 동세에 따라 조정코자 했는데 단순히 인원수의 보강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보며
-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직의 감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한 증원과 자체 인력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기구개편이 압박함에 정원조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한 결원을 5%이상 유지토록 하는 방침에도 위배된다는 토론내용임.

6. 심사결과 : 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1호중 “362명”을 “381명”으로 하고, 제4호중 “235명”을 “22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본청·의회 사무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구 본 청 : <u>362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국 : 20명</p> <p>3. 보 건 소 : 61명</p> <p>4. 동 : <u>235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구 본 청 : <u>381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동 : <u>222명</u></p>

○ 감면의 타당성

1.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6조, 지방세법 제9조에 대한 감면
 - 내무부 한시적 (2000년 12월 31일까지) 표준안
2. 타구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
 -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대전 6대도시 조례개정
3. 지역사업체(금호)는 자체단체 재정에 큰 기여
 - 지방세(구세) 매년 17억이상 납부
4. 개발부담금 납부 <납부성의 표시 약속이행>
 - 국비, 구비 포함 원금 35억, 이자 13억, 계 48억
5. 구조금융 이후 회사재정 어려움 감안
 - 지역기업 경영지원 차원

○ 지금까지 감면안한 사유

1. 회사의 지역 기여도
2. 토지이용 여부
3. 개발부담금
4. 신세계백화점 분할 측량관계
5. 차적지(전남, 화순)
6. 기타 이행사항 등(허가시)